



등록 번호 : 20181029
 최초등록일 : 2018.10.08.
 최종등록일 : 2024.07.08.

메일주소
[\[bigjjunfood@naver.com\]](mailto:bigjjunfood@naver.com)
 홈페이지 주소
www.빅쥰푸드.com

[빅쥰부대찌개]

정 보 공 개 서

(주)빅쥰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 . . .

[(주)빅쥰푸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4길 90

[대표전화번호] 1599-6246

[대표Fax] 041-587-7942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41-588-7942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 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빅쥰푸드	빅쥰 부대찌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4길 90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8.01.30.	2018.3.09.	길윤식	041-588-7942	041-587-7942
	법인등록번호	161511-0227095	사업자등록번호	758-86-0093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길윤식	빅쥰 부대찌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4길 90		
사내이사	김주호	빅쥰 부대찌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사내이사	길윤영	빅쥰 부대찌개	길윤식	041-588-7942	041-587-7942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해당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빅준부대찌개	부대찌개 프랜차이즈 음식점
상 호	빅준부대찌개 ()호점	-
상표(서비스표)		빅준부대찌개 메인 상표이며, 점포별 상표 등재 -출원번호- 40-2020-0240481
		-등록 번호- 40-1445809-0000
광 고		가맹사업시 필요에 의해 사용
		가맹사업시 필요에 의해 사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1,434,384	1,304,626	129,758	954,215	90,404	66,823
2022년	1,245,377	1,182,443	62,934	1,092,107	-12,494	-18,173
2021년	903,821	822,713	81,108	990,993	-6,060	33,375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길윤식	대표이사	2019.11.06. ~ 현재	대표 이사	가맹점 관리 및 회사 업무 총괄
	김주호	사내이사	2019.11.06. ~ 현재	이사	가맹점 관리 및 회사 업무 총괄
	길윤영	사내이사	2019.11.06. ~ 현재	이사	가맹점 관리 및 회사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해당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권)	제품 사용 및 대가 수수	2018.03.26. 출원 2019.02.12. 등록	출원 번호 40-2018-0039166 등록 번호 40-1445809-0000	(주)빅쥬푸드	2029.02.12.
 (상표권)	제품 사용 및 대가 수수	2020.12.30. 출원	출원 번호 40-2020-0240481	(주)빅쥬푸드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8년 3월 09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8년 03월 10일)

2. 당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빅쥬푸드	빅쥬부대찌개	임준호	2018.03.09. ~ 2019.11.0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연암울금로 508 304호
(주)빅쥬푸드	빅쥬부대찌개	길윤식	2019.11.06. ~ 2020.04.2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연암울금로 508 304호
(주)빅쥬푸드	빅쥬부대찌개	길윤식	2020.04.22. ~ 2022.03.2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4길 91
(주)빅쥬푸드	빅쥬부대찌개	길윤식	2022.03.24.~현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4길 90

3. 업종

영업표지	업종	
빅쥬부대찌개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부대찌개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빅쥬부대찌개]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	-------------	-------------	-------------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5	25	-	30	30	-	27	27	-
서울	1	1	-	1	1	-	1	1	-
부산	1	1	-	1	1	-	1	1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1	1	-
광주	-	-	-	-	-	-	-	-	-
대전	1	1	-	1	1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4	4	-	5	5	-	4	4	-
강원	1	1	-	1	1	-	-	-	-
충북	5	5	-	6	6	-	6	6	-
충남	8	8	-	11	11	-	11	11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2	2	-	2	2	-	1	1	-
경남	2	2	-	2	2	-	2	2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빅존부대찌개]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3	30	2	5	-	5	27
2022	25	5	-	-	1	30
2021	19	11	-	5	-	25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빅존부대찌개]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2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27	382,472	8,844	1,452,480	23,564	105,573	2,525	25곳가맹점산정
서울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부산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구	-	해당없음	-	-	-	-	-	
인천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광주	-	해당없음	-	-	-	-	-	
대전	-	해당없음	-	-	-	-	-	
울산	-	해당없음	-	-	-	-	-	
세종	-	해당없음	-	-	-	-	-	
경기	4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강원	-	해당없음	-	-	-	-	-	
충북	6	288,823	8,715	501,536	13,924	143,897	4,797	
충남	11	363,462	7,833	722,683	21,970	138,341	2,572	
전북	-	해당없음	-	-	-	-	-	
전남	-	해당없음	-	-	-	-	-	
경북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남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제주	-	해당없음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매출을 영업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매출을 산출하고 다시 365일 곱하여 연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오픈일자,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부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빅준부대찌개]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3	27	1,147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없음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당사에서 [2023년]에 해당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54,390	-	-	-
광고	소계	-	-	-	-	-
	TV	-	-	-	-	-
	라디오	-	-	-	-	-
	인터넷	-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농협은행	성환지점 (가맹금예치담당)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 12길 6	041-581-2681

귀하는 상기 표의 가맹금 예치금액을 당사의 예치신청서를 작성하여 [농협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농협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우측의 더보기 메뉴에서 기업서비스 선택 ->SOHO센터 ->가맹금예치제도 ->가맹점사업자 ->가맹예치금 예치 ->이용약관 동의 ->가맹본부 조회 후 (주)빅썬푸드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의 예치금 입금내역은 예치내역조회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또한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5,500천원(Vat포함)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3,300천원(Vat포함)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입비	5,500	계약 체결 과 동시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1.영업 개시이전까지 개업지원, Know-how 전 수,매뉴얼 및 기타 자 료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공 시 해당 대가는 제외 하고 반환 2.영업 개시 이후 반환 되지 않음(소멸)	
교육비	3,300	계약 체결 과 동시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 되지 않음	
총합계	8,800				

① 가맹비는 영업표지 사용대가 (30%), Know-how 제공대가 (30%),개업지원 대가(30%),매뉴얼 등 자료제공대가(10%)로 구성된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해당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8,800
가입비	5,500
교육비	3,3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제4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지급대상	금액 99㎡ 기준 (30평)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89,100	2,970			
인테리어	지정업체 (미지정) 또는 개별업체	54,450	1,815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1일전	공사 발주 전 계약 해지	3.3㎡늘어날 때마다 1,815천원 추가 부담
간판	(협력업체)	8,800	-	공사 1일전	공사 발주 전 계약 해지	
비품	(협력업체)	3,850	-	물품 공급 1일전	공급 발주 전계약 해지	
기물	(협력업체)	5,500	-	물품 공급 1일전	공급 발주 전계약 해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설비	(협력업체)	16,500	-	물품 공급 1일전	공급 발주 전계약 해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POS	(협력업체)	구매/임대	-	가맹개설 전일까지	공급 발주 전계약 해지	

* 위 사항은 일반적인 평균 금액이며 점포 여건(구조 및 공사기간)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별도공사 : 철거, 전기승압, 화장실 및 내부 방, 닥트 공사(주방,홀) 및 천장 철재 공사 등

* 기본전기공사 외 추가전기공사 별도 (CCTV추가 전기공사, 에어컨추가전기공사)

※당사는 상기 홍보/판촉비용을 실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가맹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인테리어(점포 내장 공사)를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감독비로 3.3㎡당 이십칠만오천원 (275,000 Vat포함)을 지급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요식업계 자격증 우대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전과사항이 없을 것 정신감정 이상 없을 것 문신 없을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제3장 또는 30조]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매출 2%	익월 1일	반환 없음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분담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 집행 시 반환 안됨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산출근거 에 의한 비용청구	교육실시 3일 이전	교육비 납부 후 실시 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후 반환 안됨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상호 협의				
점포환경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 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8%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화했을 시 부담

[당사의 광고 분담금이나 교육훈련비는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실비 수준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해당 없음(당사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매뉴얼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품질확인 ->점검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월 1회	가맹 본부
서비스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서비스 7단계 및 유니폼 착용상태 점검->점검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완료	월 1회	가맹 본부
청결 및 위생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청결도 확인 ->점검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완료	월 1회	가맹 본부
재고관리	실제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가맹 본부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1회	가맹 본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가맹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에 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 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과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에 한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가맹본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47조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권 양도]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빅쥬부대찌개 브랜드임을 알 수 있거나,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계약 종료 후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법적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 ① 간판철거
- ② 매뉴얼, 매뉴북 반납
- ③ 폐업사실증명원(폐점 시)
- ④ 로고용품 반납 or 폐기
- ⑤ 미수금 입금
- ⑥ 인테리어 철거
- ⑦ 저작물, 메뉴판, 와이드칼라, 메뉴, 판넬, 기업판넬, 인터넷 상의표시(모바일 SNS 포함)

⑧114안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 해지 등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후 정산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단,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번호1~ 8까지 철거, 및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계약이행 보증금 잔액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철거, 원상복구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체기간에 따라 철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1일 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POS 기기는 빅쥬부대찌개 브랜드의 매출추이, 추정 손익산정 등 가맹점을 통합 관리함에 있어 주요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사용함으로 강제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해당 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빅쥬부대찌개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차돌부대찌개			
등심부대찌개			
고추장 불고기			
어린이 주먹밥			
콩나물사리			
감자수제비사리			
물만두사리			
당면사리			
햄.소세지 추가			
차돌사리			
등심사리			
모듬사리			
돈가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빅쥬부대찌개	10,000	사전통지	
고추장불고기	12,000		
차돌부대찌개	12,000		
등심부대찌개	12,000		
어린이 주먹밥	5,000		
콩나물사리	2,000		
감자수제비사리	2,000		
물만두사리	2,000		
당면사리	2,000		
햄.소세지 추가	5,000		
차돌사리	6,000		
등심사리	6,000		
모듬사리	6,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은 일반적인 평균 금액이며 물가변동에 따라서 수정 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부대찌개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가맹본부	계열회사
	빅준부대찌개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단,역세권이 다른 경우 또는 왕복 6차선 이상 도로로 상권이 분명히 구분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6]가지로 자세한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45조 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45조 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5조 2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식자 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45조 2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 부가 정한 영업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45조 2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5조 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교범"이나 매뉴얼 기타본 계약상의 기준을 6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44조 1항
○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이 본 계약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점포 영업을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에 규정된 광고나 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경비의 부담을 요청 받고도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이하 "점포시설 등")이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점포시설 등의 교체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그 직원이 영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규정한 홈서비스 "운영교범"에 위배된 사고로 인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했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조리매뉴얼 미 준수나 내점 및 홈 서비스 불량으로 "가맹본부"가 소비자로부터 년 2회 이상 항의를 받은 후 시정이 안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정기 위생 점검 및 QCS평가를 거부 및, QSC 평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미달하거나 "가맹본부"의 시정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중앙공급품목"대금 또는 "로열티"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 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 본 계약에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44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 간의 서면으로 된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협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 → 수정계약서(안) 검토 → 승낙여부 서면 통지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이 없으면 거부한 것으로 결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가맹계약 후 1년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가맹본부 (1599-6246)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명의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은 후 명의변경을 할 수 있으나,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절차	기타 의무사항
----	-----------	----	----	---------

		범위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상속인 사후 통지 시	권리 전부 이전	명의변경의 절차는 양도 절차와 동일	초도 가맹금 면제 이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발생
명의변경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은 아래의 관계 1)법적관계인 배우자간 명의변경 2)가맹계약서에 명시 된 동업자간의 명의변경 3)가맹사업자의 직계 존비속간의 명의변경 4)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된 경우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 전지역 에서] 귀하가 [빅쏰 부대찌개]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부대찌개를 주 메뉴로 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가맹본부 (1599-6246)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부터 익일 22:00까지 (권장)	365일 연중 무휴 영업 (협의 후 명절 제외 가능)	문의:가맹본부 (1599-624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5일 이상 매장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당사에 서면으로 사유와 휴업기간을 명시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단, 휴업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이상	직접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매뉴얼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확인 ->점검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월 1회	가맹 운영팀
서비스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서비스 7단계 및 유니폼 착용상태 점검->점검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완료	월 1회	가맹 운영팀
청결 및 위생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청결도 확인 ->점검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완료	월 1회	가맹 운영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 제공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 및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총액의 50%를 가맹점사 업자측이 배분하 여 부담	광고 계획 공고 ->가맹점 분담액 명세서를 통지 ->가 맹점 광고 불참 시 사유를 당사에 서면 제출하여 당사 의 승인을 득함 ->통지 후 7일까지 가맹점분담액 입금 ->광고시작->가맹점사업 사 용내역 요청 시 당사는 제 시함	대중매체광고 , 명절, Day이벤 트 행사(전국 행사지역별 행 사) SNS 광고
	브랜드 및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총액의 50%를 가맹점사 업자측이 배분하 여 부담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통 일 적 인 홍보물 등 의디자인, 시안 등의 제작 비용 등은 당사 가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판매하는 상 품의 할인비용이 나 직접 제공하 는 경품, 기념품, 팸플렛,전단, 홍 보물 등의 비용 은 가맹점사업자 가 부담	행사 계획 공고 ->디자인 및 기념품 등 시안 제시 ->가맹점 행사 참여를 당사에 통보 -> 불참 시 서면으로 통보 후 당사의 승인을 득해야함 ->행사시작	월별 판촉 행사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그 광고 및 판촉활동을 목적, 내용 및 광고물 일체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 조문 제 46조 [손해배상]	
①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 발생 시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이후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금조로 각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제42조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 외에 1일당 금 3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신용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약 [7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합계		7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69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68 ~ 6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D-64~44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3 ~ 4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0
가맹금 예치	- [농협]에 가맹금 예치	D-40(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9~37(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6(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5~5(3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22~8(14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세 부 내 역
점포환경개선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집기, 장비 교체비용은 가맹본부에서 비용분담을 하지 않음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이나 지원금의 제공등과 같은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2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가맹본부 (1599-6246)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2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가맹본부 (1599-6246)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업교육	브랜드 조리교육 서비스(cs)교육 가맹점 사업자 입문 교육 현장교육(직영 & 교육기능매장) 개점후 신규점 현장 방문 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정기교육	브랜드 신메뉴 교육	집단 강의	신메뉴 개발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교육	QSC 평가 개선 교육 VOC 발생점 보수교육 동영상교육 (조리매뉴얼 시청각 교육)	실습 강의	수시	필수 교육
가맹점 사업자 교육	가맹점 사업자 간담회	집단 강의	연간 1회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 교육	21일	최초 교육비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 교육	연간 1~ 2회	최초 교육비 포함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보수 교육	수시	최초 교육비 포함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가맹점 사업자교육	연간 1회	협의 결정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별첨4참조)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교육 불 이수 시 제재	관련 계약조문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장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다.	제22조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없음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_ 해당없음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_ 해당없음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운영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021년, 2022년, 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